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비영리단체 참여 보고서(COE) 정책

2013년 10월 31일부터 비영리 회원사들은 매 2년마다 참여보고서 (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제출해야 한다.

개요

- 지난 몇 년간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들 중 영리단체에만 유엔의 십대원칙 이행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은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비영리 회원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비영리 단체들도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13년 10월 31일부터 모든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한다는 것을 COE를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
- COE는 회원사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을 지지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과 글로벌콤팩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보고서이다.
-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등재된 COE는 비영리 단체들이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부문에서 십대원칙을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중요한 공개 보고서이다. 매 2년마다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COE를 제출하지 않으면 웹사이트 상에 표기되는 회원사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일정 기간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글로벌콤팩트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참여보고서(COE) 정책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때, 비영리 회원사들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학계, 기업 관련 단체, 도시 관련 단체, NGO, 노동, 공공부문 단체)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상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밝혀야 한다.

참여보고서(COE)는 비영리 회원사들이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는 구체적 활동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보고서이다.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COE를 의무적으로 등재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주 소통채널을 통해서도 COE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COE의 형식은 자유롭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COE 준수 원칙

- 1. 비영리 회원사들은 COE를 통해서 매 2년마다 자신들의 참여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모든 COE는 다음의 내용들을 반드시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A. 이사장 혹은 이에 준하는 직위의 있는 사람이 표명한 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그 원칙들에 대한 회원사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명.
 - B. 회원사가 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을 지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실질적 조치에 대한 내용. 유엔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는 이 실질적 조치들은 각각의 비영리 단체의 성격에 따라 권장되는 특정 활동들 중 한 개 이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C. 결과물 평가 (즉 결과물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인 평가)
- 2. 비영리 회원사들은 자신들의 COE를 반드시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등재해야 한다.**
 -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번째 COE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기존의 비영리 회원사들은 2013년 10월 31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COE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COE는 직전 COE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회원사들은 투명성 재고를 위해 COE를 매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COE 전자 파일(PDF)을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COE를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함께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회원사들은 COE를 게시할 때 COE 내용에 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COE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불보고 상태 (Non-Communicating Status)

- 비영리 회원사들은 기한 내에 COE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불보고 상태(Non-Communicating Status)”로 표기된다.

글로벌콤팩트에서의 제명 (Expulsion)

- 불보고 상태의 회원사가 불보고 상태 이후로 1년 이내에 COE를 제출하지 않으면, 글로벌콤팩트로부터 제명되게 된다. 제명된 회원사의 이름은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모든 제명된 기업들은 다시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식과 언어

- COE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널리 통용시키기 위해서 회원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주 소통 채널, 예로 들어 연차 보고서 등에 COE 내용을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독려한다.
- COE 내용이 통합된 공식 보고서가 없을 경우, COE를 단독 보고서 형태(stand-alone)로 올릴 수 있다.
- COE는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로 들어, 한국 비영리 단체들은 한국어로 쓸 것을 권장.) 글로벌콤팩트 사무소는 모든 언어로 쓰인 COE를 인정한다.

COE 제출 기한 연장

제출 기한 조정 요청 (Adjustment Request) –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제출 기한 조정 요청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보고서 사이클에 맞춰 COE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출 기한 조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1개월이다.

제출 기한 연장 요청 (Grace Letter) – COE 제출이 늦어질 것 같은 경우, 비영리 회원사들은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유예 사유를 담은 유예 요청서(Grace Letter)를 제출함으로써 COE 제출 기한으로부터 90일 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은 반드시 COE 제출 기한 전에 이뤄져야 하며, 유예 기간을 받게 되면 COE 제출 기한은 90일 뒤로 미뤄진다.